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23년 3월 일

#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3월 일  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의정발전에 기여한 집행기관 직원들의 의장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·집행기관 간 상호 호혜적인 직무기반을 조성하고
- 의회 모범공무원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,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통해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의장 포상 대상 확대(안 제2조)
  -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포상대상 확대
  - (포상대상)충청북도의회 공무원 → 충청북도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
-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(안 제4조)
  -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 근거 신설
  - (포상종류)표창장, 감사장, 상장 →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모범공무원 포상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
  - 띠어쓰기 및 용어정비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시행 2022. 1. 13.] [충청북도조례 제 4697호, 2022. 1. 13.제정]

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절차를규정함”을 “절차를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충청북도의회 공무원”을 “충청북도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이 조례에 의한 포상”을 “포상”으로, “상장”을 “상장, 모범공무원 포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의회”를 “의회 및 집행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 및 제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/3”을 “3분의 2”로, “과반수 이상”을 “출석위원 과반수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절차를 규정함</u> -----.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<u>의한</u> 포상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 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 북도의회 의원, <u>충청북도의회 공무원</u> , 충청북도민(외국인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단체에 행 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충청 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도 수여할 수 있다.	제2조(포상대상)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의회</u> <u>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
제4조(포상의 종류) <u>이 조례에 의한</u>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<u>상장</u> 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	제4조(포상의 종류) ① <u>포상</u> ----- ----- <u>상장, 모범</u> <u>공무원 포상</u> -----. ② <u>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</u>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 1. (생 략)  2. <u>의회</u>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	제5조(표창장) ----- ----- -----.  1. (현행과 같음)  2. <u>의회 및 집행기관</u> ----- ----- -----

<p>3. (생 략)</p> <p>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<u>포상은</u>  <u>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</u>  <u>서식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</u> 포상은 상금, 상패,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<u>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</u> 포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공적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<u>과반수 이상의 찬성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3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<u>의한</u>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<u>포상은</u>  <u>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</u>  <u>서식까지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.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<u>제5조 및 제6조에 따른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-----  -----  <u>5명</u>-----.</p> <p>③ ----- <u>3분</u>  <u>의 2</u> ----- <u>출석위원 과반수</u>-----.</p> <p>제13조(포상대장의 등재) -----  <u>따른</u> -----.</p>
---	--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